

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(변경)

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0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투자선도지구의 명칭·위치(변경없음)

가. 명 칭 :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

나. 위 치 :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-1 일원

2.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, 시행기간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3.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(변경)

가. 사업시행자 : 고성군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
나. 사업시행방식 : 취득,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

다. 관리방법(변경)

구 분	개 발 주 체	운 영 주 체	비 고
산업시설(용지) 연구시설	고성군	고성군 경남테크노파크(T·P)	-
산업시설(용지) 산업시설	한국토지주택공사	고성군 개별입주기업체	-
지원시설(용지) 지원시설	한국토지주택공사	고성군 개별입주기업체	-
공원 및 녹지	한국토지주택공사 고성군	고성군	(당초)공동개발 후 운영 → (변경) 삭제
기반시설	한국토지주택공사 고성군	고성군	(당초)공동개발 운영 → (변경) 삭제

4. 투자대상, 투자규모,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5.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6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7. 채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(안)(변경없음): 게재 생략

8.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(변경없음): 게재 생략

9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(변경)

○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

○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(추가)

10.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11.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12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

가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

○ 열람장소 : 경상남도 균형발전과(☎055-211-6144), 고성군 일자리경제과(☎055-670-2345)

○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간

나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